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97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 강훈식 • 민병덕 • 김한규

김남근 • 강준현 • 김병기

김용만 • 이정문 • 박상혁

문진석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킹·전산장애 등의 사고(이하 "전산사고"라 함)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·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,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8조(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(이하 "전산사고"라 한다)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- 1. 접근매체(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「전자금 융거래법」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 - 2.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, 거래지시(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, 교환, 이전 또는 보관·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)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 - 3.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

써 발생한 사고

- 4.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,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·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
 - 가. 해킹, 컴퓨터바이러스, 논리폭탄, 메일폭탄,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
 - 나.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·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 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
- 5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1. 전산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
- 2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 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-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

용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8조(보험의 가입 등) 가상자산
사업자는 해킹·전산장애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
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
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
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) ①
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
(이하 "전산사고"라 한다)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- 1. 접근매체(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 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- 2.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, 거래지시(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, 교환, 이전 또는 보관·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)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

한 사고

- 3.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「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 신망"이라 한다) 또는 컴퓨 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 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
- 4.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 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,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·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. 해킹, 컴퓨터바이러스, 논리폭탄, 메일폭탄,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 파 등의 방법
 - 나.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보호·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

 보통신망
 또는
 이와
 관련

 된
 정보시스템에
 설치하는

 방법

- 5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고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 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1. 전산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 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
- 2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이용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로 가상자 산사업자가 전산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 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 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

<u>우</u>

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사고 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.